



Q&A



소비자상식



혼유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등 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송탄OO주유소에서 피신청인 직원인 송OO에게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에 주유를 요청하였는데, 위 직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위 승용차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 3,185,600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 446,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신청인이 위 제안을 거절하고 위 평택서비스센터로부터 인젝터 4개와 연료 고압펌프 및 커먼레일 등 연료 라인 전체를 교체·수리받았는데, 이는 지나치게 확대 수리받은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관련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3876 판결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인 송OO에게 경유 주유를 주문하였으나 위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고, 위 승용차의 제조사로부터 수리받아야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의 한 국지엠주식회사 평택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므로 수리비 전액인 3,185,600원 및 수리기간 동안 다 른 승용차를 임차한 비용 446,000 원 합계 3,631,600원의 배상을 요구함.

(1) 사용자책임의 발생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용자로서 그 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자는 차량의 주유 전에 반드시 연료의 종류를 말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신용카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원인을 파악한 후 주행을 하여야 함에도 주행을 계속하여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고, 피신청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혼유사고 처리 경험이 많았기에 혼유 사고 발생 직후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자동차 1급 정비사업소로부터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약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연료 탱크와 연료 라인 세척, 연료필터 교체 등의 수리를 받고 피신청인이 6개월간 위 수리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으

(2) 책임의 제한
 A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외관이 유사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결론
 피신청인은 2014. 6.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17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자료제공=소비자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8호) 제9조(중수도의 설치, 관리) 2호에 따르면, "산업직접활용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기존 공장을 증설한 경우, 기존 폐수배출량을 제외하고 증설로 인해 증가된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의 사항이 맞다면, 기존 물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증설에 따른 물 사용량의 10퍼센트에 대해서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중수도 용량을 '폐수배출량'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까지 처리하여 방류하기 직전에 물 사용량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만 일부 취하여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처리설비, 송수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발생된 폐수를 처리 없이 다른 프로세스에서 용수대신 사용한다면 이 양을 원래 필요한 총 중수도 설치 용량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폐수처리 공정 및 정수처리공정 중에 여과장치를 통과한 물을 여과장치의 역세수로 재이용할 경우에도 원래 필요한 총 중수도 설치 용량에서 역세수 사용 용량 만큼 중수도 설치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중수도와 재이용시설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있도록 중수도(처리시설, 송수시설 등)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물사용량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법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6(중수도와 물재이용시설 관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수도는 물 재이용 시설 중의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조성돈, 044-201-7154) 또는 이메일(river-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독일청소기는 일반청소기와 달라서 물을 이용한 필드 방식을 사용하고 물에다가 아로마오일을 첨가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아로마오일이 청소기의 악세사리로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로마오일에 대해서 다음에 수입할때 문제가 없도록 환경부에 검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로마오일은 가습기의 물함에 2~3방울 뿌려서 가습기를 틀면 오일의 향을 내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제품인데요 제품포면에는 유럽연합 독일에서 검사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예탄올, 비이온 계면활성제, 방향제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사요청을 해서 수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환경부에서 이러한 검사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검사서류가 따로 있는지 신청절차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 관리를 하였으나, 2015.4.1부터 동 제품을 이관받아 '화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법 제34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의 사용 시 함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향제 등 8종에 대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41호)을 2015.4.1.부터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소독제 등 7종에 대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86호)을 2015.6.26.부터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동 고시안 제3조에 따라 접착제 등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람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먼저 안전기준은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일정한 기준 이하로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제한 물질을 제품의 구성원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생산·수입하려는 제품을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고,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유해물질 기준치에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보관하고, 아울러 사용제한 물질을 제품의 구성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입니다.

시험분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해당 시험분석기관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검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시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등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완료한 제

품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준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하며, 동 시험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표시기준은 동 고시 별표2의 품목별 표시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품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동 고시 별표5의 표시사항 및 방법에 따라 품명, 종류, 성분, 사용상 주의사항, 자가검사 표시 등을 제품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5년 4월 1일부터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지정 품목은 자율안전확인(KC)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며, 안전기준 등의 확인 완료 후 별도로 환경부에 신고나 허가(인증)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또한, 동 고시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품목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16년 9월 30일까지 표시기준을 같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은 위와 같이 위해우려제품으로서 방향제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제품은 제품의 특성 상 지난 2011년 큰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고 사례와 같은 지속적인 가습기 사용에 따른 위해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품 및 함유물질 관련 상세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귀사의 부담이므로 이에 따른 동 제품 관련 문헌이나 위해성 평가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조업체로부터 충분히 제출받아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환경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법정청의 정상화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비정상적 정상화

www.normal.go.kr